

※ 7.24일 (金) 오전 8:00부터
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방향

2020. 7. 24

금 융 위 원 회

목 차

I. 검토배경	1
II.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금융환경 변화 및 당면도전	2
III. 금융정책 추진방향	4
1. 실물경제의 장기·안정적 성장을 위한 금융	5
2. 금융산업의 지평확장 및 새로운 기회 준비	7
3. 양극화 심화 가능성에 대한 촘촘한 대응	13
4. 경제위기로 내재된 금융위험요인에 대한 철저한 대비	16
IV. 향후 추진계획	19
[별첨1] 기대효과 :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모습	20
[별첨2] 핵심과제 추진일정	21

I. 검토배경

- 그간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·금융위기 대응에 정책역량 집중
 - 금융당국은 175조원+@ 규모의 금융대책을 마련하여 적기 대응중
 - 실물부분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금융시장 불안을 차단하는 등 경제충격의 방파제 역할 수행
- 그러나 코로나19는 과거 금융위기와 달리 단기적 경제충격 이외에 우리 경제·사회에 구조적·근본적 변화를 유발
 - * "세계는 Before Corona, 즉 BC와 After Corona, 즉 AC로 나뉜다"(Thomas Friedman)
 - 코로나19는 기존 4차 산업혁명 흐름과 맞물려 경제주체들의 비대면 생활패턴 확산 등 경제활동상의 근원적 행태변화를 유발
 - 코로나19 장기화시, 보건·건강·의료뿐만 아니라 국민의 경제적 안전·안정을 보장하는 정책에 대한 요구도 점증할 전망

⇒ 금융분야에서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환경변화가 불가피한 만큼, '포스트 코로나'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금융정책 기조의 차별한 준비·전환 필요

- ① 우리가 비교우위를 갖는 미래성장 新산업 분야에서 민간의 혁신·도전노력에 대한 지속적인 금융지원 필요
- ② 보다 효율적·혁신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융기관, 핀테크, ICT기업 등이 서로 경쟁·융합하는 금융산업 내 혁신 절실
- ③ 경제위기의 후유증으로 경제불평등 심화 및 취약계층의 금융소외 현상 점증 가능성에 대한 정책대응 긴급
- ④ 우리 사회에 누적된 다양한 금융리스크 요인을 선제적 관리

⇒ 코로나19가 촉발한 금융분야 환경변화와 위기를 기회로 삼아, 우리 금융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정책 방향을 마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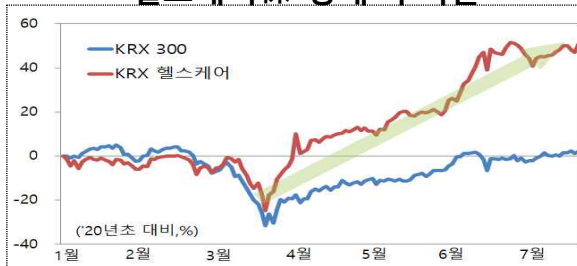
Ⅱ.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금융환경 변화 및 당면도전

1) [기회요인] 경제·금융산업 전반의 지각변동 가능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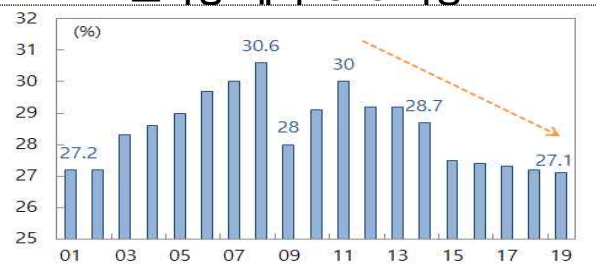
◆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함께 비대면·디지털화 가속화 등으로
실물부문 및 금융산업 등 경제전반의 지각변동 촉발

- 비대면 산업, 의료·바이오, 녹색산업 등 새로운 유망산업이 부각되는 가운데,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망(“de-globalization”)
 - 디지털화, 건강, 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산업구조 재편·고도화 예상
 - 효율성을 최우선 가치로 형성된 현행 GVC가 리쇼어링 (Reshoring) 등 회복력·대응력을 강조하는 형태로 변화 예상

< 헬스케어株 상대 수익률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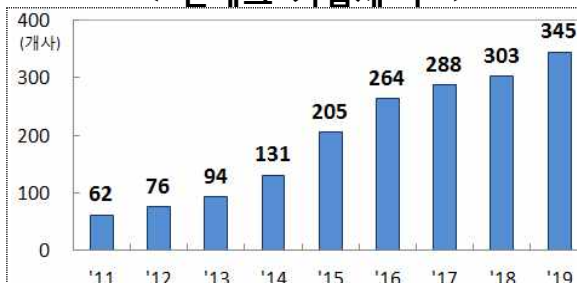


< 교역량 대비 GVC 비중 >



- 빅데이터, AI, 클라우드 등 디지털 관련 기술 활용이 확대·본격화되면서 금융산업 재편 불가피
 - 금융회사는 생존전략으로서 디지털 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, 핀테크 기업은 기존 금융산업을 대체·보완
 - 특히, 플랫폼 사업자(ICT 등 빅테크 기업)의 금융산업 진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새로운 규율체계의 필요성 부각

< 핀테크 기업체 수 >



<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기업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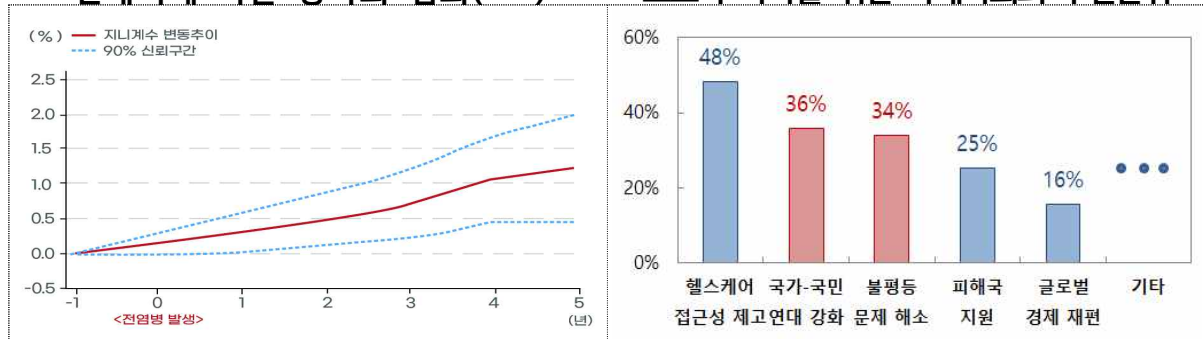
'09년말	vs	'19.3Q
페트로차이나	1	마이크로소프트
엑손모빌	2	애플
마이크로소프트	3	아마존
중국공상은행	4	알파벳
월마트	5	버크셔해서웨이

2) [위험요인] 양극화 심화 우려 및 금융불안요인 누적 우려

◆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이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, 초저금리·유동성 확대로 다양한 금융불안요인 누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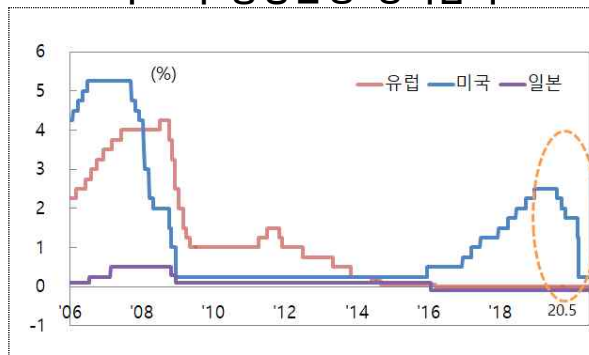
- 코로나19로 인한 경제·고용충격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가중될 경우, 양극화 심화가 불가피할 전망("Corona divide")
 - 이러한 경제위기 뒤 양극화 심화는 경제금융구조의 안정성을 훼손하여 지속적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
 - 전면적인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디지털 디바이드 심화

< 팬데믹에 따른 양극화 심화(IMF) > < 코로나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우선순위 >



- '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던 저금리 기조에 이어 무제한적 양적양화 등 '초저금리' 시대 진입("lower for longer")
 - 고수익·고위험 추구 및 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우려
 - 수익추구 과정에서 고위험 익스포져가 증가하고, 특히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非은행권을 중심으로 리스크 확대 가능성

< 주요국 중앙은행 정책금리 >



< 美 하이일드채권·레버리지론 추이 >



Ⅲ.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방향

◇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환경변화를 맞이하여, 혁신·포용·안정을 아우르는 금융산업의 퀴텀점프 계기로 삼을 필요

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환경 변화

- √ 新유망산업 부각
- √ 디지털 가속화
- √ 양극화 심화
- √ 초저금리 지속
- √ 글로벌 공급망 재편
- √ 핀테크 영향확대
- √ 디지털 디바이드
- √ 금융시장 불안요인

금융산업의 위기와 기회요인



금융정책 추진방향

혁신성장 지원	① 新성장기업 금융지원 확충 ② 자본시장 자금흐름 유도
디지털금융	① 금융산업 구조개편 대응 ② 언택트 시대 대비 규제 정비 ③ 금융분야 新산업 육성 ④ 국제금융질서 변화 대응
포용금융	① 서민금융 지원강화 ② 디지털 소외계층 지원확대 ③ 디지털시대 금융소비자 보호 ④ 금융피해·민생침대 방지
금융안정	① 혁신과 보안의 균형 ② 금융 취약요인 관리 ③ 기업부문 리스크 관리 ④ 저금리시대의 소비자보호

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금융

1) 新성장기업 금융지원 확충 및 GVC 변화대응

◆ 바이오, 비대면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로 각광받는 新산업부문 및 GVC 변화에 따른 리쇼어링 등에 대한 전략적 금융지원 추진

□ 「혁신기업 국가대표 1,000」을 통한 新성장기업 지원

* 산업부문 부처(산업부, 중기부, 복지부 등)와 협업을 통해 부문별로 혁신성이 높은 1,000개 기업을 선정 → 3년간 40조원 지원

- 바이오헬스 등 新성장 부문, 新산업으로의 사업재편 기업, 국내 “리턴기업” 등도 포함하여 선정

□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리턴 및 사업재편 기업 지원

① (리턴기업) 「설비투자 묶임(20년중 4.5조원)」을 통해 해외시설의 국내 이전 추진 기업에 대해 저금리(1.5%) 시설자금대출 지원

- 국내이전을 검토하는 기업을 대상으로, 정책 정보(세제·입주부지 등) 일괄 제공, 입주시 수익성 분석 등 컨설팅 제공(기은)

② (사업재편) 미래 성장산업으로의 사업재편 기업(산업부 등 선정)에 대해 「산업구조고도화*」, 「우대보증**」 등을 통해 지원

* 최대 $\Delta 0.7\%p$ 금리감면 ** 보증비율 90%적용 및 보증료율 0.2%p 차감

□ 동산담보·지식재산담보 확산 등 여신관행 노력 지속

- 기업이 유·무형 자산을 한 번에 담보로 설정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조속한 「동산담보법」 개정 추진

□ 소부장 기업의 국내 공급망 경쟁력 강화

- 재정을 마중물로 민간자금 등을 통해 「소부장 펀드(4천억원)」를 조성하여, 혁신적인 소부장 기업 등에 투자

☞ '20.하반기 중 200개의 혁신기업 선정 예정

☞ 리턴기업,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지원 즉시시행

2) 자본시장으로의 자금흐름 유도

◆ 국내 자본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모펀드 활성화, 기관과 개인의 차별 해소 등을 통해 원활한 자금유입 유도

□ **[공모펀드]** 투자자 중심의 펀드 판매·운용 및 수익률* 제고 등을 위해 판매채널 개선 및 운용사 경쟁력 제고 등 추진

* 연수익률(%) : ('15) 2.3 → ('16) 1.3 → ('17) 10.3 → ('18) △6.1 → ('19) 6.8 [금투협회]

○ (판매채널) 은행·증권사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판매채널이 경쟁하는 환경 조성*, 판매 관행을 투자자 입장에서 개선**

* (예) 통합자문 플랫폼(다양한 판매사를 비교하여 투자자문) 등을 통한 자문채널 활성화, 온라인 펀드슈퍼마켓 등 온라인 펀드판매 활성화

** (예) 투자기간별 유리한 펀드클래스(예 : 장기투자 → 상대적으로 낮은 판매보수형) 안내 등

○ (운용사 경쟁력) 다양한 투자자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신규 상품* 도입, 펀드운용·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** 등 추진

* (예) 외화표시 MMF, 주식형 액티브 ETF 등

** (예) 불필요한 보고·공시사항(자본금 증가시 수시보고 등) 조정 등

□ **[상장 촉진]** 혁신기업이 보다 쉽게 상장할 수 있도록 지원

○ 상장심사 기준을 미래성장성 위주로 개편하고 증권회사가 전문성·책임성을 바탕으로 IPO업무를 수행하도록 제도 개선*

* 코너스톤인베스터 제도 도입, 수요예측제도의 가격발견기능 강화 등

□ **[기관·개인의 균형발전]** 자본시장 제도·관행 전반을 점검하여 투자자 보호 수준을 촘촘하게 재정비

○ 일반 투자자가 자본시장 참여시 우대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, 공매도 관련 개인투자자들의 문제 인식도 적극해소*

* (예) 개인 주식대주시장을 확대하여 차입 공매도 제약요인 해소

☞ '20년 하반기중 활성화 방안 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 예정

1) 금융산업 구조개편 대응

◆ 금융산업의 지각변동에 대비하여 금융권의 디지털화 노력을 지원하는 한편, 빅테크 등 새로운 플레이어 진입의 제도기반 정비

① 기존 금융권의 디지털화 지원

□ **[공통]** 기존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플랫폼 비즈니스* 허용

* 현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을 통해 일부 허용중(카드사의 렌탈중개 플랫폼 운영, 보험사의 건강증진 플랫폼 사업 등)

○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, 금융회사 플랫폼 비즈니스의 적정 범위*를 검토하고, 운영방안(부수업무 또는 자회사 보유) 정비

* 플랫폼 업무와 금융업간의 관련성, 융합 및 시너지 효과 등을 감안

□ **[은행]** 은행대리업 제도 등 새로운 고객 접점 확장방안 검토

○ 비대면 영업확대에 따른 경영효율성 제고 지원 및 디지털 취약 계층의 금융접근성 유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

< 참고 : 일본의 은행 대리업 제도 (Bank Agency System) >

- (정의) 은행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 이외의 자가 은행을 위해 대리 또는 중개하는 제도로 일본 금융청의 허가(원칙), 승인(겸업)으로 운영
- (허용 업무범위) 예·적금 수입, 대출·어음 할인, 외환 거래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체결 또는 중개 → 별도 금융소비자 보호조치 및 소속 은행의 책임 의무 부여
- (현황) 비은행 금융기관, 통신·유통업체 등과 결합하여 73개의 대리점이 운영 중이며, 유초은행(우편저축은행)의 경우 3,829개 우체국을 대리점으로 활용

☞ 해외사례 조사, 시장전문가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금융회사의 플랫폼 비즈니스 허용범위 및 은행대리업 도입필요성 검토('20년 하반기중)

□ **[보험]** 채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·육성방안 검토

① (비대면) 상품구조가 간단한 대중적 상품판매 특화채널로 육성

* 아직까지 보험판매에 있어 대면채널 비중이 절대적 :

'19.1~12월 기준 생명보험은 99%, 손해보험은 88%가 설계사를 통해 모집

- 일반고객의 온라인 채널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불편사항*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규제 합리화

* (예) 전화모집(TM)의 과도한 설명의무, 온라인(CM)채널의 복잡한 가입절차

- 모집채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전자금융업자의 보험대리점 등록 허용 검토

② (대면) 고난도·고위험 상품에 강점을 가진 채널로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

☞ 「보험 모집채널 선진화 TF」를 통해 종합 개선방안 마련('20년 하반기)

□ **[금투] 핀테크, IT와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 뒷받침**

- ①** 마이데이터와의 연계 등을 통해 고객별 투자목적, 재산상황, 투자경험 등에 최적화된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 제공

- ②** 빅데이터, AI 등의 기술을 보유한 IT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트레이딩, 자산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핀테크 활용

* (예)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한 전산 프로세스 외부화, 빅데이터 분석 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고객 관리 등

☞ 자본시장법령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로 '본인신용정보관리업' 허용, 핀테크 회사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범위 조정('20년 하반기)

□ **[저축은행/상호금융] 물리적 지역구분 필요성 약화 및 지역 기반 취약차주 보호라는 상충된 역할 관련 규제 정비 추진**

- ①**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확대흐름에 따른 영업구역 재정비

* (저축은행) 저축은행 인수·합병 및 영업구역내 지점·영업소 설치 규제 완화
(상호금융) 대출구역을 기존 시·군·구(223개)에서 10개 권역으로 확대

- ②** 영업구역 확대 과정에서 지역기반 취약차주의 금융접근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지역금융 공급 촉진

* (저축은행) 비수도권 영업구역에서 적극적인 지역금융 수행시 규제상 인센티브 부여
(상호금융) 지신보 보증부 대출 및 소상공인 대출 등 정책금융 상품 공급

☞ (저축은행) 업계의견 수렴을 위한 TF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 마련(~8월)
(상호금융) 시행령·감독규정 개정(~12월) 및 정책금융상품 공급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

②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비한 인프라 종합정비

□ [공정경쟁] 빅테크와 금융회사 간 공정한 경쟁 기반 구축

- 시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규제차익, 형평성 이슈가 발생하는 사례를 조사하여 필요시 개선*

* (예) 카드사와 빅테크 간 영업규제, 건전성 규제 차익 등

-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관점에서 “동일기능 동일규제”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제체계 재검토

□ [금융안정] 금융안정·소비자보호를 위한 관리체계 마련

- ① (결제리스크) 빅테크의 지급·결제 불이행 및 이에 따른 금융 시장 시스템 리스크 확산 등을 방지하는 방안 마련

- ② (금융보안) 고객 데이터 활용 관련 정보보호 강화 및 금융 사고 발생시 보상 방안 등에 대해 검토

- ③ (소비자보호) 플랫폼 판매채널 및 제휴상품의 출현 등으로 소비자 오인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제도 정비

- 금융회사와 플랫폼기업 간 제휴·협업시 준수해야할 원칙을 수립하고 관련규율(금융업권별 모범규준)을 마련하는 방안 검토

□ [협업체] 빅테크와 기존 금융권간 갈등관리 체계 마련

- 이해당사자 간 협업체 구성 및 주기적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공존·상생의 발전방안을 모색

☞ '20년 하반기중 빅테크 협업체를 구성하여 빅테크-금융업 공동의 발전방안 모색

- (구성) 금융-IT 업계, 감독당국 및 유관기관, 민간전문가, 소비자단체 등
- (해외사례조사) 빅테크 관련 국제논의 동향을 점검
- (논의주제) 공정경쟁, 시스템 리스크, 소비자 보호 등을 폭넓게 논의
- (향후계획) 주요쟁점을 순차적으로 논의하여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, 이를 '21년 금융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추진

2) 언택트, 홈오피스 시대에 맞는 규제체계 정비

◆ 전방위적 언택트 확산 흐름에 맞춰 본인확인, 망분리 규제를 정비하고, 디지털 결제 관련 규제체계 등 인프라를 전면혁신

- **[본인확인]** 비대면 금융활동의 기반인 인증·실명확인 제도를 개선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인증수단, 본인확인 방식을 마련
 - 기존의 신분증 등을 통한 실지명의 확인 외에 디지털 新기술 기반 신원확인방식을 확대 허용

☞ '20년 3분기중 '금융분야 인증·신원확인 제도 혁신방안' 발표

- **[망분리]** 금융회사의 일상적 재택근무 확대,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을 지속 모색

* 現 코로나19 관련 재택근무 확대로 망분리 예외를 임시로 허용 중(비조치의견서)
→ 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 정비, POST 코로나 재택근무 가이드 마련 등 추진

- 업무의 본질적 성격이 금융업과 무관한 경우, 新기술 개발과 관련한 경우 등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

☞ '20년 4분기중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

- **[결제혁신]** 글로벌 수준의 종합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

① 간편결제·송금, 계좌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등이 가능한 금융 플랫폼 육성을 위해 MyPayment*, 종합지급결제사업자** 도입

② 간편결제업자 등에게 제한적 소액 후불결제 기능을 부여

* (유사사례) 통신과금서비스(한도 100만원), 하이브리드체크카드(한도 30만원)

③ 선불전자지급수단의 1회 충전한도 상향(2백만원 → 최대 5백만원)

* 1일 이용한도를 함께 신설하여 분실·도난시 이용자 피해 최소화

☞ '20.7.27 디지털금융종합혁신 방안 발표 → '20.下 전자금융거래법령 개정 추진

3) 금융분야 新산업 육성

◆ 빅데이터, AI, 클라우드 등 정체된 금융산업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혁신분야에 대한 과감한 지원 도모

□ [데이터] 새로운 플레이어 육성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추진

① 마이데이터 사업자, 비금융전문CB(Credit Bureau) 등을 신규허가

②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상공인에 원활한 자금공급을 지원하는 플랫폼 매출망금융* 사업자 출현 지원

* 주로 플랫폼 사업자들이 빅데이터 기반 신용평가, P2P플랫폼 활용 등을 통해 상거래매출채권을 기반으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서비스

③ 공공·민간에서 생성되는 금융데이터를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“금융 빅데이터 인프라(데이터 댐)” 구축·운영

☞ 8월중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→ 9월중 「매출망금융 활성화 방안」 발표 → 10월중 마이데이터 정식 허가

□ [AI] 금융권의 데이터 처리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新기술 기반 산업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 AI 활성화 추진

○ AI 활용을 저해하는 금융규제를 점검하고, AI의 소비자 차별*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 제도도 균형있게 마련

* (사례) 해외업체의 AI기반 주택매매 광고가 백인에게는 '매매'를, 유색인종에게는 '월세' 광고를 더 많이 노출하여 인종차별 논란

☞ 「금융분야 AI 활성화」 워킹그룹을 운영(7월~10월)하고 관련 정책연구용역을 발주·운영(7월~11월) → 「금융분야 AI 활성화 방안」 마련(연내)

□ [클라우드] 클라우드의 활성화 여건 마련

○ 재택근무·화상회의 등 관련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절차 간소화, 바우처 지급 등 재정 지원* 실시

* 핀테크 기업이 국내 클라우드 이용시 비용의 75% 지원('20년 예산 34.4억원 확보)

☞ 업계·전문가 의견을 참고하여 금융 클라우드 가이드 개정 추진('20.하, 금융보안원)

4) 국제금융질서 변화에 대응

◆ 기후변화,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국제논의에 주도적으로 대처

□ 기후변화 리스크를 정의·식별·측정하고, 이를 관리·감독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를 구축

○ 기후변화 리스크 정의·유형화 → 관련 리스크가 경제·금융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적으로 분석*

* 탄소배출업종에 대한 익스포져 추정,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 산업의 자산 가치 하락이 금융기관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등

○ 금융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자체적 「기후리스크 관리전략」 수립을 권고

☞ 「녹색금융 전문가 TF」를 구성·운영(8월~) →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「기후변화 리스크 관리·감독체계 구축방안」 초안 마련(연내)

□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책임투자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, ESG(환경·사회·지배구조) 정보공개 확대

① '지배구조보고서' 의무공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'26년 부터 쉐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거래소 공시 의무화

<자산규모별 지배구조보고서 공시의무 확대적용(안)>

적용시기	'19년도(既시행)	'22년도	'24년도	'26년도
자산총액	2조원 이상	1조원 이상	5천억원 이상	전체 코스피상장사

② 환경·사회정보 공개 가이드런스*를 제시하여 '지속가능경영 보고서' 자율공시를 촉진하고, 단계적으로 공개범위 확대 검토

* 정보공개를 위한 권고지표 및 Best Practice 제시, 국제표준 안내 등

☞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환경·사회정보 공개 가이드런스 마련('20.하)

1) 취약계층 확대 차단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강화

◆ 「서민금융법」 개정 및 「소비자신용법」 제정 등을 통해 저소득·저신용 서민들의 금융이용 및 재기지원 확대

□ 서민금융 공급체계 안정화를 통한 “기회의 사다리” 확충노력 지속

○ 안정적 재원*을 기반으로 향후 3년간 서민금융 총 2.7조원+@ 추가공급(연간 약 7조원 공급 → '21~23년 연간 약 8조원 공급 목표)

* 서민금융법 개정 및 출연대상 금융기관 확대(現 저축·상호 → 은행·여전·보험 추가)

※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방안(서민금융법 개정안 의원 발의)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

□ 연체 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 지원

① 상각 개인채권(통상 연체 후 6개월~1년 후)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장래 이자를 사전에 면제한 경우에만 매각할 수 있도록 개선

② 채권추심 연락횟수를 1주일 7회로 제한하고, 채무자가 특정한 시간 및 방법을 통한 추심연락 제한을 요청*할 권리를 보장

* (예) 업무 피크시간 도중 또는 집·직장 전화번호로 추심연락 제한 요청

③ 신복위 채무조정의 사각지대 해소 및 업무처리절차 개선

- 채무조정 개시 前 상환유예 제도를 상시적 절차로 확대 추진

* 既운영중인 한시적 '코로나19 관련 상환유예 특례'(20.4.29.~12.31.)를 참고하여 일정요건(예: 실업·폐업 등으로 소득 급감) 충족 채무자에 대해 적용 추진

- 신속(연체 30일 이전)·프리워크아웃(연체 31~89일)의 경우 모바일앱 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을 원칙으로 하여 이용편의 제고

☞ '20년 하반기중 「서민금융법 개정안」 및 「소비자신용법안」 국회 제출 및 서민금융안정기금 관련 관계부처 협의 추진

2)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확대

◆ 코로나19 등으로 더욱 가속화된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고령층·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방안 강구

□ 취약계층의 디지털금융 접근성을 개선

① (고령층) 금융의 디지털화에 소외되기 쉬운 고령층들도 보다 편리하게 디지털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금융환경 조성*

* (예) 고령자 전용 모바일 앱, 금융이해력 지도에 따른 교육콘텐츠 개발·제공 등

② (장애인) 장애인의 비대면 금융서비스 이용 시 장애로 인해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원

* (예) 음성 OTP 이용 편의성 제고, '23년까지 시각·지체 장애인 지원기능을 모두 갖춘 범용 ATM으로 설치(현재 전체 ATM의 47.6% 수준)

□ 오프라인 점포 축소 관련 소비자 불편 최소화

① 은행 점포 축소와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일찍 인지·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절차 보완·강화*

* ① 은행별로 수행중인 '지점폐쇄 영향평가'에 외부 평가위원을 포함
② 폐쇄점포 고객에 대해 폐쇄 3개월전(現 1개월전) 통지 의무화

② 폐쇄 점포 대신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대체창구* 마련

* ① 간이버스 등을 개조한 이동점포, STM(Smart Teller Machine) 활용 무인점포
② 고령 고객 비중이 높은 점포폐쇄 시 우체국 등 대체창구 마련 의무화

□ 금융회사의 온-오프라인 고객차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

① 온라인 특판상품과 동일·유사한 혜택을 보장하는 취약계층 전용 대면거래 상품을 함께 출시하는 방안 추진

② 고령자를 위한 '고령전용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' 구축·운영

③ 취약 고객에 대한 거래 거절시 적절한 자사·타사 금융상품을 안내하는 '대체상품안내제도(英 Sign-posting제도 참고)' 도입 검토

☞ '20년 하반기 중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 절차 개정 등 세부조치 추진

3)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재정비

◆ 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충분히 이해한 후, 안심하고 비대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·관행 개선

□ 금융회사의 영업·경영관행 개선 유도

①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 고위험상품을 거래하려는 경우 '화상상담 서비스'를 제공하는 방안 검토

② 비대면 거래 고위험상품에 대해 '완전판매 사후 모니터링'(이하, 해피콜) 실시(현재는 온라인 거래 상품은 해피콜 미실시)

* 중요사항 이해여부 등을 질문하고, 부실판매시 반송·청약철회 또는 재설명 제공

③ 소비자 친화적 비대면 거래환경 구축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(CCO) 및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의 심의 기능 강화

* (예) CCO가 인터넷·모바일 금융환경 전반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, 불완전판매 우려가 큰 거래환경(예, 고난도 상품 판매 등)에 대해서는 협의회 상정·검토

☞ '금소법 하위규정' 및 '업권별 해피콜 가이드라인'에 관련 근거 마련

□ 비대면 금융거래에 대한 감독 강화

① 소셜미디어 광고(유튜브, SNS 등)에 대한 감독 강화

* 금융회사의 소셜미디어(예, 유튜브·블로그) 광고, 판매직원 개인의 부당광고(예, SNS) 등 광고 규제 사각지대*에 대한 감독 강화

②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등을 활용하여 금융회사의 비대면 거래시 관련 소비자 보호 노력 수준 점검

③ 그간 주로 오프라인 기반으로 시행되어 온 미스터리 쇼핑을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거래과정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·강화

* 다이렉트채널(PC, 모바일)과 콜센터 TM 채널 위주로 점검하되, 회사별 특화된 비대면채널이 있는 경우 점검대상 포함 검토

☞ '20년중 업권별 협회의 '광고 심의규정' 등 개정

1) 혁신과 보안의 균형 도모

◆ 금융과 IT의 융합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디지털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·감독하여 '혁신'과 '안정·보안'간 균형 확보

□ [이용자 보호] 선진국 수준의 디지털금융 이용자 보호체계 구축

①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이용자 자금*에 대한 외부기관 보관·예치 의무화 등 EU·美·日 수준의 제도적인 보호방안 도입

* 선불충전금 규모(조원) : ('16) 1.0 → ('17) 1.4 → ('18) 1.3 → ('19.) 1.7

② 전자금융거래 복잡·다양화에 대응하여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금융회사 등이 합리적으로 책임·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

③ 지속가능한 금융혁신의 기반 마련을 위해 새로운 보안위협·리스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안원칙* 정립

* CISO 권한 강화, 계층적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등

** 침해사고대응기관(금융보안원)의 역할 및 업무범위 등을 확대하여 신기술 리스크, 사이버 위협 등에 대한 대응 강화

☞ '20년 하반기중 전자금융거래법령 개정 추진

□ [정보보호 강화] 강력한 정보보호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

① (상시점검) 금융회사 등의 데이터 활용·관리 실태를 상시적,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평가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*

* 금융회사 자체평가, 자율규제기구의 점검, 금융당국의 조치 등 중첩적 평가

② (정보주권 강화)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가 언제, 어디서 활용되는지 스스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 마련

* 정보활용 동의서 개편, 정보활용 동의내역을 한눈에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

☞ '20.11월중 상시평가제, 정보활용동의서 개편 시범 운영 → '21.2.4. 시행 예정

2) 코로나19 위기로 노출된 금융취약요인 관리

◆ 코로나19로 촉발된 시장불안 확산시 취약요인으로 부각된 제2금융권 리스크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및 제도정비 추진

□ [여전사] 유동성 리스크의 선제적·자율적·체계적 관리 강화

① 과도한 시장성 차입(여전채 등) 억제 및 외형확대 방지를 위해 자기자본 확충 유도*

- * ① 레버리지 규제(총자산/자기자본, 비카드 여전사 10배 한도) 합리화 등 검토
- ② 자산 위험도를 기초로 조정자기자본비율이 산정되도록 개편

② 개별 여전사의 자율적 유동성리스크 관리 강화

- * ① 영업 특성·규모 등을 감안한 자금조달 관리지표 및 조기경보지표 설정·운영
- ② 유동성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자금조달계획 수립

③ 유동성리스크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체계화

- * 유동성 모니터링 지표 확대, 여전업권 전체에 대한 주기적 유동성 평가 등

☞ 관계기관TF 운영(20.3분기) 등을 거쳐 「여전사 유동성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」 발표(20.4분기)

□ [증권사] 파생결합증권, 채무보증 등 관련 유동성 규제 강화

① 파생결합증권 발행 증권사에 대해 원화유동성 비율 규제 강화

- *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에 적용되는 원화유동성 비율에 파생결합증권의 만기가 실질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 강구

② 해외지수 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시 외화 유동성 등 보유 유도

- * (예) 증권사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등

③ 유동성 상황 악화시*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의무 부여

- * 조정유동성비율(유동성자산/유동성부채+채무보증)이 100% 미만 하락시

☞ '20.3분기 중 「증권사 유동성비율 규제 강화」 세부방안 발표

□ [저축은행/상호금융] 경기둔화 등에 대비한 건전성 규제 강화

- (저축은행) 전체 저축은행에 완충자본 제도(추가 자본 적립의무 부과) 도입, 대형사(예: 자산 1조원 이상)에 대한 자본규제를 강화
- (상호금융) 조합과 중앙회의 여신심사·사후관리 및 금융사고 예방대책 강화를 위한 업무처리기준* 신설

* 대출취급시 사전심사, 대출취급후 사후관리, 금융사고 예방대책 강화 등

☞ (저축은행) 업계의견 수렴을 위한 TF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 마련(~8월)
☞ (상호금융) 시행령·감독규정 개정(~12월) 및 정책금융상품 공급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

3) 기업부문, 고위험투자 확대 등 기타 취약요인 관리

◆ 기업부문 리스크 증가 및 저금리 기초·유동성 확대에 따른 고수익 투자처로의 자금 흐름 쏠림현상에도 대비

□ 기업부실 누적 등 기업부문 리스크 증가에 선제적 대비

①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규모 확대(1.6조원→ 2.6조원), 운영방식 개선(프로젝트 펀드 확대, 부채투자 전용펀드 도입) 등 마중물 역할 강화

* 성장금융유암코 등을 중심으로 앵커 투자자 역할 투자 네트워크 구축 및 투자방식 등 협의

② 기업자산 매각 지원을 통한 유동성 확보 등 기업 자구노력 지원

* 기업 자산매각 시장조성 차원에서 캠프 등 공적 주체가 수요자로 참여(2조원)

③ 구조조정 효과성 제고를 위한 종합개선방안* 마련

* 회생절차 진행 중인 기업의 원활한 신규자금 공급지원 및 불합리한 관행 개선

** 회생절차-워크아웃 간 연계 강화 등 구조조정 제도운영 효율화

□ 고수익 추구 과정에서의 보다 철저한 소비자보호 장치 마련

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적합성 원칙, 설명의무, 투자자문 규제 등을 내실화

②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관련 영업행위 준칙 시행,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·신탁 판매 제한 등 투자자 보호 강화

☞ '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'을 마련하여 '21.3월 공포·시행
☞ '20.3분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

IV. 향후 추진계획

- ◆ 최우선적으로 당면한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전념하면서,
 - 포스트코로나가 촉발시킨 새로운 위험과 기회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부문 전략을 착실히 준비하여 대처해나갈 계획

- 금융당국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당면한 위기극복에 전념
 - 175조원+@ 민생·금융안정 프로그램 및 후속 프로그램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, 소상공인·중소기업 자금지원에 중점
 - 특히, 상황 악화시에도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면밀한 모니터링 및 점검체계 가동
 - 이와 병행하여 「포스트 코로나 시대」에 예견되는 환경변화 및 금융권 지각변동에 대응할 금융정책 기초를 재점검
 - 향후 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한 위험·기회요인과 관련하여, 시장 전문가, 업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추진전략 구체화
 - 금년 하반기 중 추가적인 검토·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추진방안을 '21년 금융위 업무계획에 반영해 나갈 예정
 - 특히,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
- ⇒ 우리 금융산업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과거 관행에서 탈피하여,
-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①실물부문 성장을 선도하고,
②취약계층에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하며,
③독자적인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
“선진적 금융”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

[금융소비자 및 취약계층] 편리한 금융서비스, 따뜻한 금융지원

<p>서민금융상품 공급규모 8조원 65만명</p> 	<p>연체이자 감소</p> 	<p>온라인·비대면 거래 확대 속도 up↑ 가격 down↓</p> 	<p>민생침해·소비자피해 1조 6천억원</p> 
서민금융상품 공급	채무부담 완화	편리한 금융서비스	소비자피해 방지





[혁신기업] 신성장기업의 창업 및 성장지원

<p>1000개 기업 40조원</p> 	<p>4조 5천억원 지원 금리감면 0.7%p</p> 	<p>기술금융 '19년 182조원 → '22년 217조원</p> 	<p>기관·개인의 균형발전</p> 
혁신기업 1,000	리턴기업 사업재편 지원	기술금융·동산담보	주식시장 활성화

[금융산업] 디지털혁신과 금융안정의 조화

<p>빅테크 금융회사</p> 	<p>핀테크 기업체 수 '19년 345개 → '22년 500개 이상</p> 	<p>개인정보보호 & 금융사고방지</p> 	<p>장기저금조달 확대 유도</p> 
빅테크와의 공정경쟁	핀테크산업 활성화	혁신과 보안의 균형	리스크요인 관리

[경제 전반] 일자리창출과 안정적 경제성장

<p>일자리 11만개 창출</p> 	<p>비대면·바이오·의료 산업 성장</p> 	<p>소부장기업 경쟁력 제고 소부장 펀드 4,000억원</p> 	<p>기업구조 혁신펀드 1조 6천억원 → 2조 6천억원</p> 
정책금융지원 효과	신산업 성장	공급망 경쟁력 강화	기업리스크 관리

핵심 · 신규과제	조치 필요사항	추진일정
1. 실물경제의 장기·안정적 성장을 위한 금융지원		
▪ 혁신기업 국가대표 1,000 선정 · 지원	기업 선정	'20.下~
▪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리턴 지원	금융지원	즉시
▪ 미래 성장산업 재편 기업 지원	금융지원	즉시
▪ 활성화 방안 마련	방안 마련	'20.下~
2. 금융산업의 지평확장 및 새로운 기회준비		
▪ 은행대리업 도입 필요성 검토	방안 마련	'20.下~
▪ 보험모집채널 종합개선방안 마련	방안 마련	'20.下~
▪ 금융투자업자 겸영업무 확대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	'20.下~
▪ 금융투자업자의 위탁 업무범위 조정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	'20.下~
▪ 저축은행 영업구역 확대방안 검토	TF 운영	'20.8월
▪ 빅테크 협의체 구성	협의체 구성	'20.8월
▪ 인증·신원확인 제도 마련	방안 마련	'20.下~
▪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	방안 마련	'20.下~
▪ 전자금융거래법령 개정 추진	관련 규정 개정	'20.下~
▪ 환경 · 사회정보 공개 가이드언스 마련	가이드언스 마련	20.下~
3. 양극화 심화 가능성에 대한 촘촘한 대응		
▪ 서민금융법 개정안 마련	방안 마련	'20.下~
▪ 서민금융안정기금 운영방안 마련	방안 마련	'20.下~
▪ 연체이자 부과 제도 개선	관련 규정 개정	'20.下~
▪ 소비자신용법 제정	관련 규정 제정	'20.下~
▪ 은행 점포 폐쇄 관련 절차적 개선	관련 규정 개정	'20.下~
▪ 금융회사 고객 차별에 대한 규제 강화	방안 검토	'20.下~
▪ 완전판매 사후 모니터링 실시	가이드라인 마련	'20.下~
▪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등 기능 강화	금소법 하위 규정 마련	'20.下~
▪ 비대면 금융거래에 대한 감독강화	관련 규정 개정	'20.下~
4. 경제위기로 내재된 금융위험 요인에 대한 철저한 대비		
▪ 여전사 유동성 리스크 관리 강화	방안 마련	'20.下~
▪ 증권사 유동성 리스크 관리 강화	방안 마련	'20.下~